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040
----------	------

2023년 9월 12일
교육위원회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8월 14일, 우형찬 의원
2. 회부일자 : 2023년 8월 21일
3. 상정일자

- 제32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2023년 9월 12일 상정, 수정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우형찬 의원)

1. 제안이유

- 최근 학교 내 불법촬영 범죄 발생 및 유포 등으로 인해 학생을 비롯해 교사·학부모의 불안감 상승은 물론 2차 피해 등의 발생이 우려되는 바, 화장실 및 탈의실 등의 불법촬영에 대한 근원적 예방책 마련 필요.
- 특히,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화장실 시설 및 장비 설치기준과 관련하여 상위법 개정에 따라 화장실의 대변기 옆 칸막이 상·하단부의 빈공

간을 막는 안심스크린 등의 설치 및 설치기준에 대한 추가 조문을 개정하여 불법촬영을 통한 범죄 예방 피해 최소화 기대.

2. 주요내용

- ‘불법촬영 예방시스템 등’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
- 교육감의 역할인 화장실 불법촬영 점검계획 등과 관련해 위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불법촬영 예방 시설물 설치기준’을 상위법 개정에 근거해 규정함(안 제5조의2).

I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23년 8월 14일 우형찬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 1040호로 발의되어 2023년 8월 2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및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학교 내 불법촬영 범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개정 취지에 대한 검토

- 최근 전국에서 학교 내 불법촬영 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

며¹⁾ 특히 교내 화장실 등 취약 장소에서 불법촬영 범죄가 계속 이뤄지고 있습니다.²⁾

- 한편 국회에서는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범죄 예방을 위해 지난 2021년 7월 20일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관리자가 대통령령의 기준에 따라 대변기 칸막이를 설치하도록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고³⁾

이에 따라 금년 7월 11일 대변기 칸막이(출입문은 제외) 아랫부분과 바닥 간의 거리를 5밀리미터 이하로 하도록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7월 21일 법 시행일 이후 칸막이를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⁴⁾

- 불법촬영 범죄가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 개정조례안이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면서 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및 점검에 관하여 규정한 것은

학생, 교직원, 보호자 등의 불안감 해소와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측면에서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나. 조문별 검토

1) 제명에 대한 검토

1) 보도자료

- 교생이 교사 불법 촬영...학교 누장 대응하는 사이 또 촬영(채널A, 2023.6.23.)
- "성 욕구 못 참아"...불법 촬영 재판 중 또 학교 침입해 찍어냈다(SBS뉴스, 2023.6.9.)
- 학생·교직원 불법 촬영...자유롭게 학교 드나든 '시설 보수 직원'이 범인(MBC뉴스, 2022.10.11.)

2) 보도자료

- 학교 수영장 여자 탈의실서 불법촬영한 남학생...경찰 수사중(중부일보, 2023.6.19.)
- 교고 교사가 근무지 여자화장실서 제자 신체 불법 촬영 '입건'(중앙신문, 2023.5.18.)

3)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⑤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대변기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20.>

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개정 2023. 7. 11.>

5의3. **대변기 칸막이(대변기 칸 출입문은 제외한다)의 아랫부분과 바닥 간의 거리는 5밀리미터 이하로 해야 한다.** 다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이용자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동 개정조례안은 제명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를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로 수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최근 불법촬영기기 수준의 발달로 불법촬영 예방 장소를 화장실에 국한하지 않고 확대해야 할 필요성을 고려할 때 제명 수정에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정의에 대한 검토(안 제2조)

- 안 제2조제3호에서는 “불법촬영 예방시스템 등”을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 화장실 내 설치하는 안심스크린, 안심거울, 안심벨 등 범죄예방 환경 설계를 위한 설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최근 각 지자체에서는⁵⁾ 화장실에서의 범죄 예방을 위해 안심스크린⁶⁾과 안심거울⁷⁾ 등을 설치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함을 감안할 때,⁸⁾ 안 제2조제3호에서 불법촬영의 실효성 있는 예방을 위해 예방시스템 등에 대해 규정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3) 불법촬영 점검계획 등에 대한 검토(안 제5조)

- 안 제5조제1항에서는 교육감이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불법촬영 점검계획의 대상을 “화장실”에서 “화장실 등”으로 수정하였고 마찬가지로 제3항에서는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 작성·배포 대상을 “화장실”에서 “화장실 등”으로 수정하였습니다.

5) 보도자료: 창녕군, '여성 범죄 예방' 공중화장실 안심거울·안심스크린 설치(뉴스프리존, 2023.6.23.)

6) 화장실 칸막이 사이를 막아 불법 촬영 등 범죄행위를 차단하는 기능을 함.

7) 화장실 출입구에 거울(반사경)을 부착해 보행자 뒤에 있는 사람을 확인할 수 있어 심리적 안정감은 물론, 범죄심리를 사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음.

8) 보도자료: “안심벨요? 그게 뭔데요?” 공중화장실 ‘안심벨’ 설치·홍보 부족(전북도민일보, 2021.12.6.)

○ 이는 제명 수정에서와 같이 불법촬영 예방 대상 확대 필요성 측면에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아울러 안 제5조제5항과 제6항에서는 교육감이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사무를 위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실제적인 불법촬영 근절과 예방 측면에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4) 불법촬영 예방 시설물 설치기준에 대한 검토(안 제5조의2)

○ 안 제5조의2제1항에서는 교육감이 화장실 설치 시 대변기 출입문 상·하단부를 제외하고는 대변기 옆 칸막이 상·하단부의 빈 공간을 5mm 이하로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교육감은 기존 설치된 화장실에 대해 대변기 출입문 상·하단부를 제외하고는, 대변기 옆 칸막이 상·하단부의 빈 공간을 5mm 이하로 두기 위해 안심스크린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이나, 개정된 시행령은 대변기 칸막이 윗부분에 대해서는 환기를 위해 천장과 30cm 이상 떨어트려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⁹⁾ 안 제5조의2는 칸막이 상단부는 제외하고 하단부에 대해서만 규정하도록 수정이 필요하고, 안 제5조의2제1항에 “대변기 출입문”이 중복 기재되어 있어 이에 대한 삭제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밝혔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12681, 2023. 8. 22.).

9) 5의4. 대변기 칸막이의 윗부분과 천장 간의 거리는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대변기 칸막이 안에 개별 환기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30센티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다.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 “출입문 대변기 출입문 상·하단부를” 을 “출입문을” 로, “상·하단부의” 를 “하단부의” 로 수정함(안 제5조의2제1항).
- “출입문 상·하단부를” 을 “출입문을” 로, “상·하단부의” 를 “하단부의” 로 수정함(안 제5조의2제2항).

VII.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040
----------	------------

제안연월일 : 2023년 9월 12일
제안자 : 교육위원장

1. 수정이유

- 개정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대변기 칸막이 윗부분에 대해서는 환기를 위해 천장과 30cm 이상 떨어트려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안 제5조의2는 칸막이 상단부는 제외하고 하단부에 대해서만 규정하도록 수정함.
- 안 제5조의2제1항에 “대변기 출입문” 이 중복 기재되어 있어 이를 삭제함.

2. 주요내용

- “출입문 대변기 출입문 상·하단부를” 을 “출입문을” 로, “상·하단부의” 를 “하단부의” 로 수정함(안 제5조의2제1항).
- “출입문 상·하단부를” 을 “출입문을” 로, “상·하단부의” 를 “하단부의” 로 수정함(안 제5조의2제2항).

3. 참고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의2제1항 중 “출입문 대변기 출입문 상·하단부를”을 “출입문을”로, “상·하단부의”를 “하단부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출입문 상·하단부를”을 “출입문을”로, “상·하단부의”를 “하단부의”로 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p><u>제5조의2(불법촬영 예방 시설물 설치기준) ① 교육감은 학교 및 교육 관련 시설에 화장실 설치 시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변기 출입문 대변기 출입문 상·하단부를 제외하고는 대변기 옆 칸막이 상·하단부의 빈 공간을 5mm 이하로 둘 수 있다.</u></p>	<p>제5조의2(불법촬영 예방 시설물 설치기준) ① 교육감은 학교 및 교육 관련 시설에 화장실 설치 시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변기 <u>출입문을 제외하고는 대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의 빈 공간을 5mm 이하로 둘 수 있다.</u></p>
	<p><u>② 교육감은 기존 설치된 화장실에 대해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변기 출입문 상·하단부를 제외하고는 대변기 옆 칸막이 상·하단부의 빈 공간을 5mm 이하로 두기 위해 안심스크린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u></p>	<p>② 교육감은 기존 설치된 화장실에 대해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변기 <u>출입문을 제외하고는 대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의 빈 공간을 5mm 이하로 두기 위해</u> 안심스크린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p>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를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로 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불법촬영 예방시스템 등”이란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 화장실 내 설치하는 안심스크린, 안심거울, 안심벨 등 범죄예방 환경 설계를 위한 설비를 말한다.

제5조의 제목 “(불법촬영 점검 등)”을 “(불법촬영 점검계획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화장실에서의”를 “화장실 등에서의”로, “화장실 불법촬영”을 “화장실 등의 불법촬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화장실”을 “화장실 등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불법촬영 예방 시설물 설치기준) ① 교육감은 학교 및 교육 관련 시설에 화장실 설치 시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변기 출입문을 제외하고는 대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의 빈 공간을 5mm 이하로 둘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기존 설치된 화장실에 대해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변기 출입문을 제외하고는 대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의 빈 공간을 5mm 이하로 두기 위해 안심스크린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u> <u>불법촬영 예방 조례</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2. (생 략)</p> <p><신 설></p> <p>제5조(불법촬영 점검 등) ① 교육감은 <u>화장실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화장실 불법촬영 점검계획(이하 “점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p> <p>② (생 략)</p> <p>③ 교육감은 <u>화장실 불법촬영 점검과 관련해서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수 있다.</u></p> <p>④ (생 략)</p> <p><신 설></p>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등의</u> <u>불법촬영 예방 조례</u></p> <p>제2조(정의) ----- -----.</p> <p>1·2. (현행과 같음)</p> <p>3. <u>“불법 촬영 예방시스템 등”</u> <u>이란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 화장실 등에 설치하는 안심스크린, 안심거울, 안심벨 등 범죄예방 환경 설계를 위한 설비를 말한다.</u></p> <p>제5조(불법촬영 점검계획 등) ① -- - <u>화장실 등에서의 -----</u> <u>----- 화장실 등의 불</u> <u>법촬영 -----</u>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u>화장실 등의 -----</u> ----- ----- -----.</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u>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u></p>

<신 설>

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5조의2(불법촬영 예방 시설물 설치 기준) ① 교육감은 학교 및 교육 관련 시설에 화장실 설치 시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변기 출입문을 제외하고는 대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의 빈 공간을 5mm 이하로 둘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기존 설치된 화장실에 대해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변기 출입문을 제외하고는 대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의 빈 공간을 5mm 이하로 두기 위해 안심스크린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